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55

발의연월일: 2022. 12. 5.

발 의 자: 송석준 · 김영식 · 김예지

박대수 • 박덕흠 • 서일준

유상범 • 윤한홍 • 정우택

조경태 · 최영희 · 황보승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는 상황임.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 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대리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함(안 제24조).
-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대상 으로하고,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 및 제35조제1항).
- 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간섭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경업간섭행위를 하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2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까지"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을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 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 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 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 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 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 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u>제15조</u> 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u>제14조까</u> 지, 제14조의2, 제15조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	 제32조(시정명령)

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 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 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 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 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 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 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 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 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 조부터 <u>제15조까지</u>,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 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 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u>15조</u>
-3	,
제	35조(과징금) ①
	<u>제14조까지, 제14조의2,</u>
	<u>제15조</u>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자
 - 4. <u>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u>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	39조(벌칙) ①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 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 5.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